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32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김문수·김남근·임미애

박지원 • 서미화 • 김 윤

이광희 • 이수진 • 허성무

김우영 · 이재강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

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 ·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③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 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 의 유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 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려하여 정한다. 지도 · 감독기관(이하 "관할청" 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 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⑤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 <신 설>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학교에 두는 교직 <신 <u>설></u> 원의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 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 조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이 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

<u>다.</u>